

공급업자 Speak Up 정책

목적

Woolworths Group 은 공급업자들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번창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사가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제나 진정성과 진실성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본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보거나 경험했다면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는 귀하의 우려 사안을 구매자나 품목 관리자에게 제기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다음 등의 이유로 인해 귀하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
- 그런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사안이 객관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리라 생각
- 이미 그런 경로를 통해 사안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

본사의 공급업체 Speak Up 서비스는 귀하가 비밀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기할 수 있는 (Woolworths Group 외부의) 독립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자 Speak Up 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본사의 공급업자 Speak up 서비스는 호주나 해외에서 Woolworths Group 에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자, 계약업자¹ 혹은 컨설턴트는 물론, 그들의 친척이나 부양가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들을 '귀하'로 지칭합니다.

공급업자 Speak Up 은 어떤 상황에 이용할 수 있나요?

공급업자 Speak Up 서비스를 통해 일반 내부 경로를 통해 제기하기 불편한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 및 식료품 행동 수칙 위반
- 사기, 뇌물, 자금세탁, 부패, 비밀 위임 혹은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
- 사람 혹은 제품 안전에 대한 위협
- 절도, 제한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반경쟁적인 거래 관행 등의 법률 위반
- Woolworths Group 의 책임 구매 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 위반

¹ 농장 근로자, 트롤리 수거자 및 청소인 포함

- 이해 상충
- Woolworths Group 이나 관련 업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태, 상황 혹은 위법 행위
- 기밀 정보의 부당한 사용
- 책임 구매 정책에 정리된 사안 등의 인권 침해

귀하가 제기하는 우려 사안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Speak Up 서비스에 연락하기 전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위 사안 중 하나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했음을 보여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기재된 사안 중 일부는 2001년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Cth), 기업법)*이나 *조세관리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세법)*에 따라 “신고 가능 사안(disclosable matter)”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귀하가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하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신고는 “**보호대상 신고(protected disclosure)**”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Speak Up 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부속서류 A(호주 대상)와 부속서류 B(뉴질랜드 대상)에 보호대상 신고 및 Woolworths Group 에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 및 익명성

Speak up 신고나 보호대상 신고 시 또는 이후에 귀하는 익명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Speak Up 시스템, 익명 이메일 주소 혹은 귀하가 고른 가명은 Woolworths Group 이 귀하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와 명확성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중 귀하는 어떤 후속 질문이라도 이를 통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난다고 여긴다면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익명성이 신고된 사안의 조사와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신원 포함)는 접근 통제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귀하의 신고로 제기된 사안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귀하의 동의 없이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급업자 Speak Up 이용 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요?

Speak Up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문제를 제기한 결과로 귀하가 불리한 결과나 피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귀하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귀하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은 누구라도 최대 해고에 이르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Speak Up 신고 제기의 결과로 피해를 보았다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이 일에 대하여 신규 Speak Up 신고 제기

- WPOfficer@Woolworths.com.au 을 통해 Woolworths Group 의 내부고발자 보호 담당관(WPO)에 연락. WPO 는 독립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귀하의 우려 사항을 검토하거나 처리를 가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고 처리 및 조사 절차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Woolworths Group 의 외부 Speak Up 서비스 제공업체가 신고내용을 심사한 뒤, Woolworths Group 의 Speak Up 담당자나 그 대리인에게 적절한 세부 내용을 전달합니다. Woolworths Group 은 전달받은 신고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한 보호, 분류, 검토 그리고 조사를 위한 적절한 배치를 결정합니다.

본사는 조사가 타당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공급업자 Speak Up 신고나 보호대상 신고를 조사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신고된 사안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조사는 편견 없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보통 연루된 관련 업체와는 독립된 조사관이 수행하며,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부 경우에는 Woolworths Group 외부의 조사관이 참여합니다(예를 들면, 잠재적인 이해 상충 또는 고위급 임직원이 연루되었을 때)

공식 조사 기간은 혐의 숫자, 증인 및 기타 요인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대상 신고를 조사할 때는, 부속서류 A 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업법과 세법의 비밀유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Woolworths Group 의 Speak Up 관리자 혹은 외부 Speak Up 제공업체는 귀하의 신고 접수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진전 사항을 알릴 것입니다. 이 정보 업데이트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사는 조사나 기밀 정보의 노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귀하는 결과를 통보받지만, 귀하의 신고를 조사하여 밝혀낸 상세 내용을 정례적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관, 증인 혹은 결정자 등 조사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행정 구조

- 최고법률책임자(CLO)가 공급업자 Speak Up 프로그램을 감독하여 객관성과 독립적인 검토를 공고히 합니다. 그룹 법률부(Group Compliance)는 제기된 사안의 상황이나 성격을 보고하고 자문합니다.
- Speak Up 행정위원회(Speak Up Governance Committee)는 CLO 와 최고인사책임자(CPO) 및 그룹 법률부 대변인 등을 포함한 기타 고위 지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소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어 서비스의 효율성을 검토하며, 절차와 결과의 일관성을 공고히 하고 관련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 이 정책은 2001 년 기업법에 따른 Woolworths Group Limited 의 내부신고자 정책입니다. 이는 해당법에 규정된 모든 관련 법인체에도 적용됩니다.
- 이 정책은 Woolworths Group 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Speak Up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의 협력업체 허브인 partnerhub.woolworthsgroup.com.au 의 '사안 해결(issue resolution)'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보호대상 신고에 관한 자세한 조언 등 공식적으로 신고를 제기하기 전에 추가 정보를 구하려면, WPOfficer@Woolworths.com.au 을 통해 Woolworths Group 의 내부고발자 보호 담당관(WPO)에 연락해 주십시오.

공급업자 Speak Up 신고 방법

- **전화**
 - 호주 1800 772 173 (공급업자 Speak Up)
 - 호주 1800 4GROCERY (1800 447623) (식료품 규정 신고 전화)
 - 뉴질랜드 0800 393 76736
 - 홍콩 800-96-0016
 - 중국 400-6-612-693
 - 인도 000-117; 프롬프트에서 다음 번호를 누르세요: (844) 476-9151
 - 태국 1800-013-018
- **온라인** WoolworthsSpeakUp.ethicspoint.com

정책 변경	이 정책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고용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인일자:	2020 년 6 월 3 일
효력일자:	2020 년 6 월 3 일
책임자:	최고법률책임자(CLO)
연락처:	GroupCompliance@woolworths.com.au
관련 정책:	직원 Speak Up 정책
발표	이 정책은 Woolworths Group 인터넷 사이트와 공급업자 포털 'Partnerhub'의 링크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속서류 A – 호주 기업법 및 세법상의 법적 보호

호주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 신고(protected disclosure)”를 할 수 있습니다.

1.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
2. 보호대상 신고를 접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신고가 “신고 가능 사안(disclosable matter)”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 신고에는 기업법 및 세법의 내부고발자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나 법정 대리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조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호대상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그 순간부터 해당하는 기업법이나 세법상의 관련 법적 보호 대상 자격을 얻습니다. 공급업자 Speak Up 을 이용하면 정책상 받게 되는 보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정책은 귀하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귀하나 접수인이 해당 신고가 보호 자격을 충족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보호 정책은 귀하의 신고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신고 시점에 신고 대상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역시 적용됩니다

이 보호 정책은 귀하의 신고 내용에 드러나거나 추후 발견되는 귀하의 부정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A. 보호대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9 년 7 월 1 일부터 기업법이나 세법상 적용되는 보호대상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여야 합니다

호주 내부고발자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eligible whistleblower)”란 호주 Woolworths Group 회사와 다음과 같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a. 관리자
- b. 근로자
- c.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개인 및 공급업체의 직원(유급, 무급 모두 포함)
- d. 회사의 협력업체인 개인
- e.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기업법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개인의 배우자나 친척,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 세법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개인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혹은 부양가족의 배우자

2. 보호대상 신고를 접수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Speak Up 서비스는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 아닙니다.

Woolworths Group 내부 신고

Woolworths Group 은 일차적으로 다음 임명된 보호대상신고 담당관들에게 보호대상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직책	이름	이메일	전화
최고인사책임자	카린 카치코지아니 스(Caryn Katsikogianis)	PD4CPO @woolworths.com.au	1800 PD4CPO (1800 734 276)
최고법률책임자	빌 리드(Bill Reid)	PD4CLO @woolworths.com.au	1800 PD4CLO (1800 734 256)
최고재무책임자	스티븐 해리슨(Stephen Harrison)	PD4CFO @woolworths.com.au	1800 PD4CFO (1800 734 236)

그러나 위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사안을 신고하는 것이 불편할 때는, 다음 해당인 중 한 명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a. 호주 Woolworths Group 회사의 관리자 혹은 고위 담당자
유의사항: ‘관리자’ 직책에는 울워스 이사나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가 포함됩니다. ‘고위 담당자’란 그 결정이 울워스사의 적어도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울워스 재무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b. Woolworths Group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를 시행하는 감사팀의 구성원
- c. Woolworths Group 회사의 보험계리사

위에 언급된 사람들 이외에도 세법상 정보 공개가 가능한 대상

- Woolworths Group 회사의 세금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임무를 가진 Woolworths Group 의 기타 모든 직원 및 관리자
- Woolworths Group 회사에 세무사 서비스나 B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세무사나 BAS 대리인

Speak Up 서비스는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 아닙니다.

Woolworths Group 외부 신고

울워스 사는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들이 내부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지만,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들은 기업법에 따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호주 금융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혹은 규정된 연방 당국에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들은 또한 조세관리법에 따라 국세청장(Commissioner of Taxation)에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Speak Up 서비스는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 아닙니다.

법조인에 공개

기업법과 세법에 따라, 해당 법의 내부고발자 조항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나 법정 대리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조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또한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합니다.

공익 신고

기업법에 의거해야만 보호 자격이 부여되는 '공익 신고'라 불리는 별도의 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는 언론인이나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으나, 오직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 a.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기업법에 따라 ASIC, APRA 혹은 규정된 연방 기관에 적절한 신고를 먼저 했던 경우;
- b.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진 후 최소 90 일이 지난 경우
- c.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보기에 적절한 신고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d.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공익 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e. 90 일이 지난 후,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는 적절한 신고를 처음으로 한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면 공지를 해야 합니다.
 - i. 적절한 신고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
 - ii.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공익 신고를 할 의도가 있음을 기술
- f. 공익 신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언론인이나 국회의원에게 부정행위, 부적절한 사태나 상황 혹은 기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리는 것 그 이상이어서는 안됩니다.

긴급 신고

기업법에 따라야만 보호 자격이 부여되는 '긴급 신고'라 불리는 별도의 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는 언론인이나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으나, 오직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 a.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기업법에 따라 ASIC, APRA 혹은 규정된 연방 기관에 적격한 신고를 먼저 했던 경우
- b.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보기에 해당 정보가 한 명 이상의 사람 혹은 자연환경의 건강 혹은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과 관련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c.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적격한 신고를 한 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기술한 서면 공지를 한 경우
 - i. 긴급 신고를 할 의도가 있음
 - ii. 적격한 신고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
- d. 공익 신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을 언론인이나 국회의원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이어서는 안됩니다.

공익 혹은 긴급 신고를 하기 전,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고 내용이 "신고가능 사안(disclosable matter)"이어야 합니다.

오직 특정 유형의 제보만이 호주 내부고발자 법률에 따라 보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제보하는 정보가 다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기업법에 따라 "신고가능 사안(disclosable matter)"이 됩니다.

- a. Woolworths Group 회사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 혹은 부적절한 사태나 상황과 관련됨. 위법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Woolworths Group 에 의한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절도, 불법 약물의 취급이나 사용, 폭력이나 폭력 협박 재물손괴
 - b. 사기, 자금 세탁 혹은 부적절한 자금 유용
 - c. 뇌물 제공 또는 수수
 - d. 재무 왜곡 표기 또는 비리
 - e. 법률이나 규제 요건의 준수 미이행 또는 위반
 - f. 신고했거나 신고했다고 의심되는, 혹은 신고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고 협박.
 - g. 과실
 - h. 배임 및 직무 태만(단순한 개인의 사적인 행위가 아님)
- b. Woolworths Group 회사나 직원 혹은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연루되었음을 나타냄
 - i. 다음 법의 조항에 위배 혹은 위반되는 범죄에 해당
 - 기업법(Corporations Act)
 - 2001 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 1959 년 은행법(Banking Act 1959)
 - 2001 년 금융분야(데이터 수집)법(Financial Sector (Collection of Data) Act 2001)

- 1973 년 보험법(Insurance Act 1973)
 - 1995 년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
 - 2009 년 전국 소비자 신용 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 1993 년 연금산업(감독)법(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 ii. 최소 12 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기타 연방법에 위배되는 범죄에 해당
 - iii. 공공이나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될 수 있음
 - iv. 기업법에 따라 제정된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적 업무 관련 고충은 해당 내용이 피해와 연관되지 않으면 기업법에 따라 보호받지 않습니다. (아래 파트 B 의 섹션 3 참조)

다음의 경우 신고가 '개인적 업무 관련 고충'에 해당합니다.

- a. 내부고발자의 고용에 관련되며 고발자와 개인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추가로
- b. 해당 정보가
 - i. 호주 Woolworths Group 회사나 다른 규제 기관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ii. 본 부속서류의 상단 3(b)에 언급된 행위 혹은 의심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보호 자격이 되지 않는 개인적 업무관련 고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대인 갈등
-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당하는 (단순한) 따돌림
-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부주의로 한번 기준 미달 급여를 받음
-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징계 대상이거나 승진을 하지 못함
- 전반적으로 Woolworths Group 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사안.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이전에 보호대상 신고를 하여 피해를 본 경우는 제외.

개인적 업무 관련 고충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보호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대상 사안과 개인적 업무관련 고충에 관련된 경우(예: 이들이 혼합된 신고)
-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기업법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정 대리를 구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세법상 정보가 '신고가능 사안'에 해당합니다.

- a. 해당 정보가 Woolworths Group 회사 또는 Woolworths Group 사의 협력사의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이나 부적절한 사태나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가지고 있을 때
- b. 해당 정보가 적격한 접수인이 Woolworths Group 회사 또는 Woolworths Group 회사의 협력사의 세무 업무와 관련한 기능 혹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간주하는 경우.

B. 제가 보호대상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법적 보호로는 무엇이 있나요?

호주 내부고발자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 신고를 한 경우, 본 정책에 설명된 보호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의 추가적 법적 보호가 적용될 것입니다

1. 소송으로부터 보호

호주 내부고발자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 신고를 하는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한 특정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민사, 형사 및 행정(징계 포함) 조치
- 정보 누설이 계약 위반이라는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포함한 계약상 조치.

보호대상 신고의 일환으로 다음 기관에 제출된 모든 정보는

- 기업법상 ASIC, APRA 혹은 연방 당국으로 규정된 기관
- 세법상, 국세청장,

형사 소송이나 처벌 부과를 위한 재판에서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정보의 허위와 관련된 재판은 예외입니다.

2. 신원 보호

귀하가 보호대상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하는 과정에 신원을 밝히는 경우, 누구라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신원이나 식별 가능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다음 기술된 예외 제외).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보호대상 신고를 할 때,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조사 및/또는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의를 거부한다면, 신고 사안을 적절히 조사하거나 응대(해당 경우)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원을 다음에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입니다.

- ASIC, APRA, AFP 혹은 국세청장(세법상 보호대상 신고와 관련)
- 신고와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나 법정 대리를 구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인
- 기업 법령(Corporations Regulations)에 규정된 기관

또한 제기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원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하의 공유(신원 이외)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이 경우 본사는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ASIC, APRA 혹은 AFP 는 연방, 주 혹은 테리토리 당국이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하기 위해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이나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의 식별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해당 당국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역시 기업법과 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Woolworths Group 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 신고에 관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 관련 서류에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삭제
- 내부고발자의 동의하에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오직 적법하게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공유

3. 피해 방지

개인이나 회사가 자격 있는 내부고발자나 다른 사람에게

- 피해를 주거나 줄 행동에 연루
-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직접적, 함축적, 조건 유무 모두 해당)

상대 또는 제삼 자가 보호대상 신고를 했거나, 했을지도 모르거나, 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믿음/의심이 행동한 이유의 일부분에 불과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피해”에는 해고, 징계 조치, 괴롭힘, 차별, 재산 피해, 명예 실추 및 기타 유형의 대인 손해가 포함됩니다. “피해”에는 피해로부터 귀하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예: 신고 사안이 신고인의 직접적 업무 구역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경우). 또한 신고인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고 해서 Woolworths Group 이 미흡한 업무 실적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호대상 신고는 접수 시 귀하와 신고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위험을 판단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본사는 적절한 조치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신고대상인을 포함하여 신고에 언급된 사람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귀하를 피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격한 접수인들은 비밀유지를 확실히 하고 이러한 신고로 말미암아 귀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Woolworths Group 은 귀하가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하거나 같은 수준의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귀하의 작업장이나 업무수행 방식에 기타 변경을 적용 또는 신고대상 사안에 연루된 다른 직원을 이전 혹은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Woolworths Group 은 해당 행동의 혐의를 조사할 것이며, 위에 언급된 행위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처벌 및/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연루 대상자들은 누구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Woolworths Group 은 귀하에게 장기 휴가나 대체 경력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거나 배상 또는 기타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부고발자 법률에 반하는 피해를 보거나 피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 추가 보호대상 신고를 제기
- 이를 목적으로 Speak Up 신고를 제기(유의사항: Speak Up 서비스에 하는 신고는 보호대상 신고가 아닙니다.)
- WPOfficer@Woolworths.com.au 을 통해 Woolworths Group 의 내부고발자 보호 담당관(WPO)에 연락. WPO 는 독립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귀하의 우려 사항을 검토하거나 처리를 가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 명령

법원은 광범위한 범위의 피해 혹은 피해 협박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처분, (개인 직원 및 그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 명령, 복직, 징벌적 손해배상 및 사과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와 형사 제재 역시 기업법 및 세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신고의 처리와 조사

보호대상 신고가 이루어지면, 적용되는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 Woolworths Group 의 Speak Up 담당자나 그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보호대상 신고는 이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타 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보호대상 신고의 조사 기간은 요구되는 성격이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Woolworths Group 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Woolworths Group 은 조사 결과를 최고법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조사 결과의 기록과 보고 방식은 신고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 보고는 해당하는 비밀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부속서류 B - 뉴질랜드 법적 보호

뉴질랜드는 *보호대상신고법(Protected Disclosure Act 2000)* (**뉴질랜드 법률**)이라는 고유의 내부고발자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보호대상 신고를 할 때 신고인의 제보가 '보호대상 신고' 자격을 갖추는 방법과 추가로 받는 법적 보호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가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다음의 경우 Woolworths 에 대한 보호대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Woolworths 의 근로자
- Woolworths 의 이전 근로자
- Woolworths 에 파견된 자
- Woolworths 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된 개인

제 신고가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가 Woolworths 가 저질렀거나 그 내부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경우
- 신고인이 해당 정보가 진실이거나 진실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 신고인이 심각한 부정행위의 조사를 원하는 경우

'심각한 부정행위'의 예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중 보건이나 공공 안전 혹은 환경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행위, 누락 또는 방치
- 범죄의 예방, 조사 및 발견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법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행위, 누락 또는 방치
- 범죄를 이루는 행위, 누락 또는 방치

보호대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보호대상 신고를 하려면 이 정책에서 Woolworths 가 설명한 방법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다음 개인들이 보호대상신고법상의 Woolworths 뉴질랜드 보호대상 신고 접수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직책	이름	이메일	전화
Woolworths 뉴질랜드 법률자문위원 (General Counsel)	제임스 래드클리프 (James Radcliffe)	PD4GENC@countdown.co.nz	0800 PD4GENC (0800 734436)
Woolworths 뉴질랜드, 문화 및 인사부 본부장 (General Manager)	폴린 드유니엔벨 (Pauline d'Unienville)	PD4GMHR@countdown.co.nz	0800 PD4GMHR (0800 734464)

뉴질랜드에서 보호대상 신고를 했다면, 공급업자 Speak Up 신고에 관하여 본 정책에 설명된 보호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의 추가 법적 보호가 적용될 것입니다.

1. 개인적 고충

뉴질랜드 법률은 보호대상 신고를 한 뒤 해고와 같은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2. 민사 및 형사 소송 면책

뉴질랜드 법률은 보호대상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민사, 형사 혹은 징계 절차가 취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비밀유지

뉴질랜드 법률은 보호대상 신고의 비밀유지를 요구합니다. 보호대상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관받은 모든 사람은 귀하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귀하가 정보 공개를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신원을 드러내는 정보 공개가 귀하의 우려 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공중 보건, 공공 안전 혹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신원을 드러내는 정보 공개가 자연 정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인 경우